

2022) 건설안전기술사 1차 정오표 [2021.11.23]

■ 1. 산업안전보건법

[개정 : 고덕]

페이지	해당 위치	오	정														
11	II. 선임대상 내용 변경	II. 선임대상 1) 건축 120(토목 150)~800억, 300~600인 : 안전관리자 1인 2) 800억 이상, 상시 600인 이상 : 2인(안전관리자 1인, 건설안전기사 or 건설안전산업 기사 중 1인) 3) 800억 기준 700억 추가 시, 600인 기준 300인 추가 시 : 안전관리자 1인씩 추가 4) 1,500억 이상, 상시 900인 이상 : ① 건설안전기술사 ② 건설안전기술사 미보유 시 : 건설안전기사실무 10년 이상, 건설안전산업기사실무 13년 이상 5) 시 군 구 사업장 15km 이내 동일한 사업주 경영 시 : 2개 이 상 사업장 공동 1인 선임 가능	II. 선임대상(2020.07.01 이후 착공 현장에 해당) 1) 공사금액 80억 이상 : 안전관리자 1인 이상(유해위험방 지계획서 대상 무관) 2) 공사금액 50억 ~ 800억 미만 : 안전관리자 1인(2)항 부터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적용대상) 3) 공사금액 800억 ~ 1,500억 미만 : ① 공사기간 15/100 ~ 85/100 해당 시 안전관리자 2명 ② 공사기간 15/100 ~ 85/100 외 기간 안전관리자 1명 4) 공사금액 1,500억 ~ 2,200억 미만 : ① 공사기간 15/100 ~ 85/100 해당 시 안전관리자 3명, ② 공사기간 15/100 ~ 85/100 외 기간 안전관리자 2명, ③ 공사기간 내 기술사 혹은 경력자 1명 이상 포함 5) 공사금액 2,200억 ~ 3,000억 미만 : ① 공사기간 15/100 ~ 85/100 해당 시 안전관리자 4명, ② 공사기간 15/100 ~ 85/100 외 기간 안전관리자 2명, ③ 공사기간 내 기술사 혹은 경력자 1명 이상 포함 6) 공사금액 3,000억 이상 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[별표 3] 참고														
	III. 선임자격 내용 변경	III. 선임자격 1) 건설안전기술사 2) 건설안전기사, 건설안전산업기사 3) 산업안전기사, 산업안전산업기사 4) 4년제 대학, 전문대학 해당 학과 졸업 5) 관리감독자 : 건설시공 실무 3년 이상, 4년제 이공계 대학 1년 이상, 지정교육 수료 후 소정 시험 합격 6) 안전관리자격 취득 7)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자로 10년 이상 재직	III. 선임자격 1) 건설안전기술사 2) 건설안전기사, 건설안전산업기사 3) 산업안전기사, 산업안전산업기사 4) 4년제 대학, 전문대학 해당 학과 졸업 후 관리감독자 로 건설시공 실무 3년(4년제 이공계 대학 1년)이상, 지정교육 수료 후 소정 시험 합격 5)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학교 졸업 후 관리감독자 업무 5년 이상, 지정교육 수료 후 소정 시험 합격 6)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자로 10년 이상 재직														
18	II. 대상 내용 변경	II. 대상 1) 건축 3~120억(토목 3~150억) 2) 전기정보통신 1~120억 3) 제외 : 3억 원 미만, 3월 미만 ① 도서지역(제주도 제외) ② 안전관리자 배치 후 해당 노동관서 승인 ③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	II. 대상 1) 공사금액 1억원 이상 2) 건축법 제11조의 건축대상공사 3) 제외 ①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② 도서지역(제주도는 제외) ③ 고용노동부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현장 ④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														
21	III. 교육시간 표 내용 수정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대 상</th> <th colspan="2">시 간</th> </tr> <tr> <th>신규</th> <th>보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관리책임자</td> <td>6시간 이상</td> <td>6시간 이상</td> </tr> <tr> <td>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전문기관 종사자,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 종사자, 안전검사기관,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, 석면조사기관 종사자</td> <td>34시간 이상</td> <td>24시간 이상</td> </tr> <tr> <td>안전보건관리담당자</td> <td>-</td> <td>8시간 이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대 상	시 간		신규	보수	관리책임자	6시간 이상	6시간 이상	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전문기관 종사자,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 종사자, 안전검사기관,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, 석면조사기관 종사자	34시간 이상	24시간 이상	안전보건관리담당자	-	8시간 이상	
대 상	시 간																
	신규	보수															
관리책임자	6시간 이상	6시간 이상															
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전문기관 종사자,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 종사자, 안전검사기관,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, 석면조사기관 종사자	34시간 이상	24시간 이상															
안전보건관리담당자	-	8시간 이상															

3. 건설기술관리법

해당 페이지	해당 위치	오	정																							
74	V항 1) 변경	1) 배치기준(개선안)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rowspan="2">책임 상주감리</th> <th colspan="2">상주감리</th> <th rowspan="2">비상주(수시)감리</th> </tr> <tr> <th>현행</th> <th>개선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대상</td> <td> - 다중이용건축물 문화 판매 종교 종합 병원 관광숙박 여객 시설 용도면적 5천㎡ 이상 또는 16층 이상 </td> <td> - 면적 5천㎡ 이상 건축물 - 아파트(5개 층 이상 주택) 등 - 준다중이용건축물(문화 판매 종교 종합병원 관광 숙박 위락시설 장례식장 등의 용도면적 1천㎡ 이상) </td> <td> - 연속 5개층 + 면적 3천㎡ 이상 건축물 </td> <td> - 연속 2개층 + 면적 2천㎡ 이상 건축물 </td> <td> -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(면적 85㎡ 초과 증개축 등) - 리모델링 건축물(준공 15년 이상 경과) </td> </tr> <tr> <td>배치기준</td> <td> - 책임감리원 (건축사보 상주) - 분야별 감리원 (토목 전기 기계 등 해당 분야 감리원 배치) </td> <td> 1인 상주 - 공사감리원(건축 사보) : 공사 안전 감리 공동수행 분야별 감리원 - 토목 전기 기계 등 해당분야 공사기간 동안 배치 </td> <td> 2인 상주 - 공사감리원1(건축 분야 건축사보) - 안전감리원1(안전 분야 건축사보) </td> <td> 수시 필요 시 감리자 공사 방문 감리 </td> </tr> <tr> <td>감리자</td> <td> - 건설기술용역업자 (건설기술진흥법) - 건축사(건설기술진흥 법에 따라 건설기술인 배치 시) </td> <td colspan="3"> 건축사(건축사법에 따라 등록된 자)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책임 상주감리	상주감리		비상주(수시)감리	현행	개선안	대상	- 다중이용건축물 문화 판매 종교 종합 병원 관광숙박 여객 시설 용도면적 5천㎡ 이상 또는 16층 이상	- 면적 5천㎡ 이상 건축물 - 아파트(5개 층 이상 주택) 등 - 준다중이용건축물(문화 판매 종교 종합병원 관광 숙박 위락시설 장례식장 등의 용도면적 1천㎡ 이상)	- 연속 5개층 + 면적 3천㎡ 이상 건축물	- 연속 2개층 + 면적 2천㎡ 이상 건축물	-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(면적 85㎡ 초과 증개축 등) - 리모델링 건축물(준공 15년 이상 경과)	배치기준	- 책임감리원 (건축사보 상주) - 분야별 감리원 (토목 전기 기계 등 해당 분야 감리원 배치)	1인 상주 - 공사감리원(건축 사보) : 공사 안전 감리 공동수행 분야별 감리원 - 토목 전기 기계 등 해당분야 공사기간 동안 배치	2인 상주 - 공사감리원1(건축 분야 건축사보) - 안전감리원1(안전 분야 건축사보)	수시 필요 시 감리자 공사 방문 감리	감리자	- 건설기술용역업자 (건설기술진흥법) - 건축사(건설기술진흥 법에 따라 건설기술인 배치 시)	건축사(건축사법에 따라 등록된 자)			
구분	책임 상주감리	상주감리			비상주(수시)감리																					
		현행	개선안																							
대상	- 다중이용건축물 문화 판매 종교 종합 병원 관광숙박 여객 시설 용도면적 5천㎡ 이상 또는 16층 이상	- 면적 5천㎡ 이상 건축물 - 아파트(5개 층 이상 주택) 등 - 준다중이용건축물(문화 판매 종교 종합병원 관광 숙박 위락시설 장례식장 등의 용도면적 1천㎡ 이상)	- 연속 5개층 + 면적 3천㎡ 이상 건축물	- 연속 2개층 + 면적 2천㎡ 이상 건축물	-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(면적 85㎡ 초과 증개축 등) - 리모델링 건축물(준공 15년 이상 경과)																					
배치기준	- 책임감리원 (건축사보 상주) - 분야별 감리원 (토목 전기 기계 등 해당 분야 감리원 배치)	1인 상주 - 공사감리원(건축 사보) : 공사 안전 감리 공동수행 분야별 감리원 - 토목 전기 기계 등 해당분야 공사기간 동안 배치	2인 상주 - 공사감리원1(건축 분야 건축사보) - 안전감리원1(안전 분야 건축사보)	수시 필요 시 감리자 공사 방문 감리																						
감리자	- 건설기술용역업자 (건설기술진흥법) - 건축사(건설기술진흥 법에 따라 건설기술인 배치 시)	건축사(건축사법에 따라 등록된 자)																								

11. 가설공사

해당 페이지	해당 위치	오	정
254	Ⅲ. 유의사항 1)항 그림 수정	<p>개구부 덮개</p>	
255	Ⅳ. 종류 낙하물방지망 그림 수정	<p>낙하물방지망</p>	
256	Ⅲ. 원인 낙하물방호선반 그림 수정	<p>낙하물방호선반</p>	